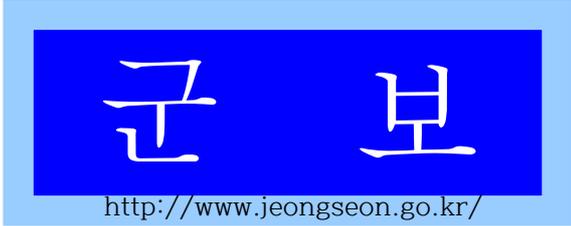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1호 2022. 3. 2.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3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174호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2-197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32
- 정선군 공고 제2022-230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3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1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덕송정수장 및 북평정수장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통합 신설하여 정수처리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 설비)으로 결정(변경)하고자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30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수도공급설비 (덕송통합정수장)	정선읍 덕송리 603번지 일원	-	증) 11,046	11,046	금회	-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수도공급설비 (덕송통합정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공급설비(정수장) 신설 - A= 11,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수도공급시설의 효율적 개선 관리를 위한 수도공급시설(덕송통합정수장) 신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지도 : 실
음생략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174호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비
- 나.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경관심의 업무추진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방향,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5조)
-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및 내용 및 공청회 의견 수렴(안 제6~8조)
- 경관사업 대상, 계획서,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12조)
- 경관사업 협의체 설치·구성, 기능 및 의결방법 등(안 제13~16조)
-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 및 운영회 신고사항 등(안 제17~24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등(안 제25조)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안 제26조)
- 본위원회·소위원회·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안 제27~30조)
- 정선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신청, 의제, 포상(안 제31~34조)

3.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02. 18. ~ 2022. 03. 0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0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431), 팩스(033-560-2596)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경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 가. 제안의 개요
 -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2. 경관현황종합분석도(1/25,000)
- 3. 경관기본구상도
-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모의실험
-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 5. 자원조달 가능성 여부
-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 1. 가로(街路), 광장, 수변공간(水邊空間)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4. 교량 등 거대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 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 호수·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사업
-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의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 5. 그 밖에 경관 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 2. 사업 시행 후의 모의실험
 - 3. 기대효과
 - 4. 연차별 집행계획
 - 5. 사업관련 경관계획도서
 - 6.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3.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 4.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 5.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선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3. 건축·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경관사업 시행자
- 5.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6. 군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5조(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건축물의 외부 색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 4. 경관협정 이행계획

-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명
-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3. 사업비 산출근거
- 4. 사업비 조달 계획
-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 3.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로 시설면적 3,300㎡ 이상인 시설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 2. 사업면적 또는 사업구간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 3.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 2. 중점경관관리 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규모가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5. 지상 10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

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 1.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건축물
-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장
- 5.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③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이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이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정선군 경관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③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군수는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 1. 법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지원 및 승인에 대한 사항
-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2조(심의신청) ① 제31조에 따라 경관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경관 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2. 경관 계획서
- 3. 계획도면
- 4.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 5.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 6. 국토교통부 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 ② 제1항의 경관 심의 신청 서류의 작성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의 장기 미래계획은 기본구상안이 나온 초안 단계
 - 2. 시설물 설치사업은 외관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 이전 단계

제33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1. 「정선군 건축 조례」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 2.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정선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 시설 및 사업

제34조(포상) 군수는 경관 형성에 기여하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정선군 경관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계획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정선군 경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사업의 기대효과 등
------	--

■ 정선군 경관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협정개요	경관협정 명칭	
	경관협정 위치	
	유효기간	
	주요협정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협정체결자 수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정선군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회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협정운영회 규약(운영목적 및 방법, 기능 및 역할 등)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대표자 및 회원(위원) 선임방법 4. 경관협정 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정선군 경관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신청인 (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피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정선군 경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정선군 경관 형성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심의 신청서

사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작성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 여)		
	주소(사무실) (전화:)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부지면적		사업량	
	용 도	사업기간		공사비
	사업내용			

「경관법」 제30조 및 「정선군 경관 조례」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또는 조감 사진 4. 조성 후 경관 모의실험 5. 국토교통부고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따른 서류
------	---

[붙임] 관계법령 발췌

<< 관계법령 발췌 >>

□ 경관법

○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사항

-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④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경관협정의 명칭
-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 3. 경관협정의 목적
- 4. 경관협정의 내용
-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명칭과 주소
-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

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3. 행정시장
-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도지사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 1. 사업의 목표
- 2. 사업주체
-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군·행정시·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2. 부위원장
 -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197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문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위탁운영(안 제4조)
- 이용료(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02. 21. ~ 3. 3.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58),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상공인 지원 시설”이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소상공인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4. “수탁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는 정선군에서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 2.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위탁운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양도의 금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6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각 시설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100%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상공인지원 시설의 기능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시설명	기능	위치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교육, 전시, 카페, 판매, 홍보, 족욕장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6
황토약초게스트하우스	숙박, 관광안내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38

【별표2】

시설 이용요금(제6조 관련)

황토 약초 게스트하우스 이용 요금

구분	수량	비수기	성수기	기준인원(명)	비고
4인실	4	30,000원	40,000원	4	가족실
2인실	1	15,000원	30,000원	2	

- 성수기 : 7. 1. ~ 8. 31.(2개월), 그 외는 비수기
- 1인 1박 기준(1박 : 당일 15:00 ~ 익일 11:00)
- 朝食 미제공, 실내 금연(Non-smoking room)
- 침구 및 세면도구 : 미제공 원칙(침낭 등 개인 침구류 및 세면도구 지참 必)
※ 현장 별도 요청 시 추가비용 발생(프론트데스크로 문의)
- 제공시설 : 무선인터넷(WIFI), 객실별 에어컨 및 TV, 공용 주방(공용 싱크/냉장고), 공용 화장실/샤워실(남/녀 별도), 약초음료 자판기, 방법용 카메라, 아리랑마을콘텐츠홀 족욕장 1회 이용 가능(1회당 최대 30분 소요)
(이용가능시간 19:00~21:00, 사전예약 필수)
- 만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아리랑마을 콘텐츠홀 부대시설 이용요금

시설명	개소수	이용가능시간 (1회 사용시간)	이용료	비고
족욕장	8	10:00~21:00(30분)	3,000원	
교육장	1	별도 계약		
전 시	1	별도 계약		

【별표3】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비수기(성수기 외)		성수기(7.1. ~ 8.31.)	
기준	환급내용	기준	환급내용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100% 환급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100%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 (이용시간 이전)	선납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 당일 취소 (이용시간 이전)	환급 불가

정선군 공고 제2022-230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별표2에 재정된 글램핑장의 이용요금에 대하여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이용요금 인상

3.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2. 02. 25. ~ 3. 7.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30), 팩스(033-560-2589)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2022- 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12조의2 관련)

1. 자연체험시설

가. 시설별 이용요금

(단위: 원)

시설명칭	스카이워크 전망대	짚와이어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개별이용	2,000	35,000	10,000	13,000	10,000
글램핑숙박시	무료	28,000	8,000	10,000	8,000

- ※ 청소년(어린이 포함)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1,000원
- ※ 짚와이어 이용자의 스카이워크 전망대 입장료 : 무료

나. 종합이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올패키지	짚패키지	비 고
글램핑숙박자	46,000	41,000	
글램핑비숙박자	51,000	46,000	

- ※ 「올패키지」는 가항의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1회)을 뜻함
- ※ 「짚패키지」는 가항중 어드벤처시설을 제외한 자연체험시설 전체 사용 (1회)을 뜻함

2. 야영장

가. 이용요금

(단위 : 원)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비 고
글램핑	대형	120,000	160,000	※ 성수기 : 매년 5월~10월
	소형	90,000	130,000	

나. 주의사항

- 1) 시설사용 기준(1일)
 - o 당일 14:00 ~ 다음날 11:00
 - 1일 미만으로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1일 이용료 추가 징수
- 2). 캠핑장 내 전기사용
 - o 소형가전(조명기구, 노트북, 전기장판 등 / 총 합계 500W 미만) 사용 가능
 - 단, 텐트 내에서는 온열기, 온풍기, 전기히터, 전기난로 등 사용금지